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4
----------	------

제출일자: 2017. 5. 11.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 동(洞) 확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1) 총정원 : 1,158명 ⇒ 1,23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135명 ⇒ 1,212명 (증 77명)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3명 (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별표3)

1) 총정원 : 1,158명 ⇒ 1,235명

2) 일반직 계 : 1,153명 ⇒ 1,230명

○ 6급이하 소계 : 1,086명 ⇒ 1,163명 (증 77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3. 17. ~ 4. 6.)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158명”을 “1,2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35명”을 “1,21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235	1,235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230	1,230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0	2	10	15
	6급이하 소계	1,163	1,163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4	4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p>제2조(정원의 총수) 광진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58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1,135명 2. (생략)</p> <p>[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p>	<p>제2조(정원의 총수) 광진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3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1,212명 2. (현행과 같음)</p> <p>[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158</td> <td colspan="4">1,158</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계</td> <td>1,153</td> <td colspan="4">1,153</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7</td> <td>5</td> <td>1</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57</td> <td>30</td> <td>2</td> <td>10</td> <td>15</td> </tr> <tr> <td>6급이하 소 계</td> <td>1,086</td> <td colspan="4">1,086</td> </tr> <tr> <td>전문 경력관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58	1,158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1,153	1,153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0	2	10	15	6급이하 소 계	1,086	1,086				전문 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4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국</th> <th>보건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235</td> <td colspan="4">1,235</td> </tr> <tr> <td>정무직계</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계</td> <td>1,230</td> <td colspan="4">1,230</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7</td> <td>5</td> <td>1</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57</td> <td>30</td> <td>2</td> <td>10</td> <td>15</td> </tr> <tr> <td>6급이하 소 계</td> <td>1,163</td> <td colspan="4">1,163</td> </tr> <tr> <td>전문 경력관계</td> <td>2</td> <td colspan="4">2</td> </tr> <tr> <td>별정직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35	1,235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1,230	1,230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0	2	10	15	6급이하 소 계	1,163	1,163				전문 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58	1,158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1,153	1,153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0	2	10	15																																																																																																																				
6급이하 소 계	1,086	1,086																																																																																																																							
전문 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235	1,235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1,230	1,230																																																																																																																							
3급	1	1																																																																																																																							
4급	7	5	1	1																																																																																																																					
5급	57	30	2	10	15																																																																																																																				
6급이하 소 계	1,163	1,163																																																																																																																							
전문 경력관계	2	2																																																																																																																							
별정직계	4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 동(洞) 확대 추진을 위해 인건비 확대

2. 비용추계의 전제

찾동 인력 정원 순증분(사회복지직 77명)의 인건비는 1인당 30,000천원으로 산정하고, 시비 75%(구비 25%) 지속 지원

(2017 상반기 중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비						
	시비	1,732,500	1,732,500	1,732,500	1,732,500	1,732,500	8,662,500
	구비	577,500	577,500	577,500	577,500	577,500	2,887,500
	소계(a)	2,310,000	2,310,000	2,310,000	2,310,000	2,310,000	11,550,000
세출	국비						
	시비	1,732,500	1,732,500	1,732,500	1,732,500	1,732,500	8,662,500
	구비	577,500	577,500	577,500	577,500	577,500	2,887,500
	소계(b)	2,310,000	2,310,000	2,310,000	2,310,000	2,310,000	11,55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시비(보조금)		1,732,500	1,732,500	1,732,500	1,732,500	1,732,500	8,662,500
구비	지방세수입	577,500	577,500	577,500	577,500	577,500	2,887,5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310,000	2,310,000	2,310,000	2,310,000	2,310,000	11,550,000

5. 작성자 : 총무과장 서 문 석